또 하나의 시작! 행복한 도전!

임실고등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4학년도 임실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1. 관련: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등교육과-1479(2024.2.20.)
2. 2024학년도 임실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임실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1부
2. 전입학심의위원회협의록 1부. 끝.

교사(중등)	임영아	교감	김준수	교장	2024. 3. 5. 이선구

협조자

시행 임실고등학교-1349 ( ) 접수 ( )

우 5592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257(임실읍) / https://school.jbedu.kr/imsil-h

전화 063-642-5081 /전송 063-644-7518 / / 부분공개(6)

2024.06.17 11:09 임실고등학교 임영아

임실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규정

○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전북교육 2024-147)에 따라, 본교의 전입 결정은 학교장이 행한다.

○ 전•편입 허용 범위

► 일반적 사유: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전입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6조, 제 92조)

► 특별한 사유: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거주지 이전과 관계없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

***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입학**

1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일지역 타교로 전입학 가능(동일지역=평준화지역)

2 학교장 간의 협의에 의하여 동일지역 타교로 전입학이 안 될 때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입학 할 학교를 배정한다.

3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전입학을 요청한다.

► 정원내 결원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정원내 결원이 없는 경우 정원외로 허용하며, 정원외 인원은 정원내 결원이 생기면 즉시 정원내로 전환 관리한다.

► 전입조건을 갖추고, 본교 전입학심의위원회 2/3 동의가 있을 경우

►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전입학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 전입 불가

► 전 가족의 거주지 이전이 아니라, 주소 변동 없이 학교만 이동하고자 할 경우 불가함.

► 통학거리 때문에 전입 희망할 경우 불가함.

► 본교 전입학심의위원회 2/3 동의를 득하지 못 할 경우

► 임실관내 고등학교간의 전입학은 불가함

► 관내 중학교 출신이 관외 및 타시도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생활부적응 등의 사유로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 학교 평가시기와 맞물려서 성적처리에 곤란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전입 절차

► 재학증명서, 생활기록부 발급(재적학교),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1부 → 재학증명서 지참 전입학 신청서 1부 (전입희망학교) → 전입학심의위원회 결정 → 전입희망교에서 전산자료 송부요청 → 재적학교 전출 수속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학적반영(해당학교)

붙임1.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붙임2. 전입학신청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서약서

○ 휴•복학자의 재입학

► 재•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

► 휴학 기간은 휴학일을 기준으로 .....(학기별,학년별로 하되), 보호자나 관련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2024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전북교육 2024-147) 관련 규정에 의거한다.

붙임1.

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주 예정 관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부·모·자 등 전 가족 등재
- 단독(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
- 친족 및 친척의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거주지 이전으로 미인정

❍ 입주 예정 관련 서류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거주의 개념: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는 아버지이나 어머니와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다.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이 지방근무로 인하여 친권자 중 일부가 지방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라. 가정위탁 보호아동 후견인의 거주지

2. 가거주(위장 전입)에 대한 판단 기준: 다음의 가거주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 주민등록이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나.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 하는 경우 (단, 1의 '다'항 해당자 제외)
 라.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마.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사업장 등에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

3. '거주지'라 함은 『민법』 제909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하며, '일상생활의 근거지' 여부는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판단

붙임2.

전.편입학 신청서

1. 학생소속 :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성별 (　　)
3. 주소 및 연락처:　전북 임실군　　전화(　010-　　)

위와 같이 귀교에 전(편)입학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과 학생과의 관계: (　　)　　신청인 :　　(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재학증명서 1통
3. 생활기록부 사본 1통

임실고등학교장 귀하

----------절----------취----------선----------

1. 학생소속: (　　)학교 (　　)학년 (　　)반
2. 학생성명: (　　) 성별 (　　)
3. 전. 편입학 순위: (　　)순위
4. 학교 전화번호: 교무실(　　), 행정실 (　　)

위와 같이 본교에 전. 편입학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임실고등학교장 (직인)

(　　)귀하

<서식 4> 거주지 이전 확인서

거주지 이전 확인서

성 명: **(학년 반)**
생년월일: **년 월 일**
학 교 명:

□ 신거주지 주소 :
□ 휴대폰 번호 :

위 학생과 전 가족은 상기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였으며,
추후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원적교로 환원 조치 등 학생의
전입학에 따른 모든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인)

임실고등학교장 귀하

<서식 7> 거주지 약도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건물을 중심으로 자세히 기재
◦ 승차버스 번호와 버스정류장 기재
◦ 주택 소유자 또는 문패 성명 기재

상기 거주지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 서명

또는 인

※ 전입학 이후 거주지 이전 확인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실 확인 후 작성

서 약 서

성명 :
주소 :

위 본인은 (　　)고등학교 재학 중 2024. . .자로 본교 7차일반 ( ) 학년 전입을 희망한 학생으로 전입이 허락 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학교생활에 임할 것을 보호자 및 후견인 연서로 서약합니다.

1. 임실고등학교 규정을 지키고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1. 임실고등학교 지정 교복을 입고 복장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1. 이전 고등학교와의 교육과정 차이로 인한 대한 입시에서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1. 기타 전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2024. . .

위 본인 (인)
보호자 (인)

임실고등학교장 귀하